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세부추진계획(안)

2026.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유통조성처 직거래사업부

목 차

I. 추진개요	1
II. 세부추진계획	2
III. 사업신청 및 선정계획	4
IV. 보조금 집행 및 현장점검	6
V. 기타 유의사항	9
[붙임1]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보조금 지원항목	12
[양식1]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신청서	15
[양식2]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6
[양식3]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서약서	22
[양식4]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명단	23
[양식5] 참여 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확인서	24
[양식6] 부가세 등 미환급 확인서	25
[양식7] 정례 직거래장터 교육·교류행사 결과보고서	26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2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2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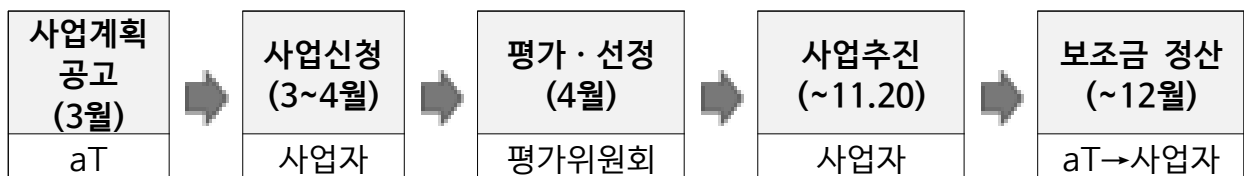
□ 추진목적

- 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 지원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신 유통경로 확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도모

□ '26년 추진방향

- 장터 신청유형 구분(도심형/지역형)으로 도농 교류의 장 확대 노력
 - (도심형) 도시의 소비지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농상생형 장터
 - (지역형) 지역농산물 생산 지역(연접지 포함)에서 개장되는 장터
- * 도심형은 추후 예산 추가배정 우대 및 도농상생 직거래장터로 유형 구분 가능
- 사업 지원 기간을 단년도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터의 자립 유도
 - * (예외) '25년 연속사업자로 기선정된 장터는 2년차 지원
- 보조금 교부시기 조정을 통한 사업 운영 효율성 및 집행률 제고
 - 중간정산 후 잔여 국비지원액(전체 국비지원 금액의 10%)을 선지급
 - * (기존) 최종정산 신청 후 e나라도움 처리 및 보조금 잔액 교부하여 집행액의 국고-자부담 집행비율 조정 등 행정 복잡성 존재 및 집행비율 조정에 따른 최종정산액 확정 지연

□ 추진절차



□ 사업예산 : 380백만원 / 직거래장터 지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증감 (B-A)	비고
	'25(A)	'26(B)		
정례장터	560	380	▲180	(1년차)6개소 내외, 개소당 국비 25백만원 내외 (2년차)12개소 내외, 개소당 국비 18백만원 내외

II.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지방정부, 민간단체(법인), 공공기관

○ 상세 지원자격 요건

- (지방정부) 다음 유형의 민간단체(법인)와 위탁운영계약 필수 체결
- (민간단체(법인) 또는 공공기관) ①공고일 기준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②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지원가능한 민간단체(법인) 유형

- ①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②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 ③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④ 공익법인(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⑤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산림조합법 제2조) * 축협 포함
- ⑥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 ⑧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허가, 인증, 신고)必

□ 신청유형 : 민관협업형, 민간자율형

민관협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민간단체 (법인)가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장터(법인과 지방정부간 위탁계약서 필수) → 지방정부가 예산지원, 부지제공, 참여농가 선정 중 1개 이상의 역할 담당 필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예산지원</td> <td>지방정부가 자부담 30%(2년차의 경우 자부담 50%) 재원 중 일부 부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지제공</td> <td>민간단체(법인)에게 장터 개설 부지제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농가선정</td> <td>지방정부 주관 장터 참여농가 구성</td> </tr> </tbody> </table>	구분	설명	예산지원	지방정부가 자부담 30%(2년차의 경우 자부담 50%) 재원 중 일부 부담	부지제공	민간단체(법인)에게 장터 개설 부지제공	농가선정	지방정부 주관 장터 참여농가 구성
구분	설명								
예산지원	지방정부가 자부담 30%(2년차의 경우 자부담 50%) 재원 중 일부 부담								
부지제공	민간단체(법인)에게 장터 개설 부지제공								
농가선정	지방정부 주관 장터 참여농가 구성								
민간자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법인)이 지역·소속 농가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장터 								

□ 장터유형 : 도심형, 지역형

도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지역 또는 대도시 중심지에서 운영(특·광역시, 특별자치시) ○ 대도시 내 소비자가 밀집된 지역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 형태
지역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과 생산자 중심으로 시·군 단위 지역 농특산물 판매 ○ 지역문화, 축제 등과 연계한 특색있는 장터

□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개설(시설·장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국비 지원

- 사업자 역량에 따른 사업자 구분 및 필수 집행항목 설정

순번	지원 구분	설명	필수 집행항목
1	신규 진입 희망 사업자	신규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려는 사업자	(필수)교육·교류행사
2	운영 활성화 희망 사업자	기 운영중인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하려는 사업자	(필수)컨설팅비
3	운영 안정화 희망 사업자	기 운영중인 직거래장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자	(필수)역량강화비

* 사업자 유형별 지원항목 중, 필수 집행항목 미집행시 운영실적 평가시에 반영

**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1] 정례장터 보조금 지원항목 참고

□ 지원규모 : 총 18개소 내외, 국비 380백만원

구분	개소수*	지원예산	지원금액	지원기준*
신규사업자	6개소 내외	164백만원	개소당 국비 25백만원 내외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25년 선정)	12개소 내외	216백만원	개소당 국비 18백만원 내외	국비 50% 자부담 50%

* 모집 개소수는 지원 예산 범위에서 신청 장터 개소 수 등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요건 : 다음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후에도 반드시 준수 하여야하며, 미준수시 국비 회수 및 지원중단

순번	의무사항	구분	
		1년차(신규사업자)	2년차(`25년 선정)
1	참여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개장일마다 15농가 이상 참여 ※ 세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 수 기준은 농가별 직거래장터 참여확인서[붙임3] 기준 - 참여자 취급품목은 직접 생산(생산, 가공, 채집 등)이 확인된 농·축산물에 한함 * 공산품, 수산물 제외 - 사업 신청자 본인이 참여 농가로 동시 참여 시, 1 농가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개장일마다 12농가 이상 참여
2	개최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5회 이상 개최(선정일 ~ `26.11.20) - 판매공간 일정규모 이상 확보 - 텐트 15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약 13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2회 이상 개최(선정일 ~ `26.11.20) - 판매공간 일정규모 이상 확보 - 텐트 12동 또는 이에 준하는 크기 (약 109㎡)이상
3	개설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터 운영 기간 동안(최소 1년이상)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 공문서,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필수 ※ 장터 개설지 점용권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용허가 면적 및 기간 명기 필수 - 부지 임대비용 지원불가 - 개설지가 운영주체의 소유일 경우, 토지/건축물대장 제출 - 지방정부 소유부지는 지방정부 사용허가 관련 공문 제출 - 지방정부 산하조직, 사업소 부지 등은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유로 인정 	
4	개장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5월 이내 개장(지정일 이후 미개장 시 선정 취소) * 해당 기간내 개장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미리 득해야함 	

* 선정 후 사업 의무사항이 담긴 장터 운영 이행계약서 체결 예정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 ~ 1년

- 장터 운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장터 지원 시 활용 가능

Ⅲ. 사업신청 및 선정계획

□ 사업신청

- (신청기한) '26. 3. 16(월) ~ 4. 3(금) *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
- (공고방법)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www.baroinfo.com) 공지사항 게시, 지방정부·농협 등 관련 기관 공문 발송 등
- (신청방법) 바로정보 홈페이지(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 바로정보(회원가입 필요) > 사업자 지원 >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지원사업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 사업신청 공문 - 민간자율형 : 민간단체(법인)의 직인을 포함할 것 - 민관협업형 : 지방정부에서 전자공문으로 aT에 접수	
	○ 사업신청서 *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신청서 작성	양식1
	○ 사업 계획서	양식2
	○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에 대한 서약서	양식3
	○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명단	양식4
	○ 참여 농가 개별 직거래장터 참여확인서	양식5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 장터 개설지 사용 허가 증빙서류 - 공문,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단체 또는 법인 정관 * 정관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	
	○ 부가세 등 미환급 확인서 * 과세사업자 또는 겸업사업자(매입세액공제)의 경우만 제출	양식6
가점	○ 사회적기업 확인서	
민관협업형	○ 지방정부-운영주체간 장터 위탁운영 계약서	

* 모든 증빙서류는 '26년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선정계획

- (선정규모) 6개소 내외(신규 사업자) * 선정규모는 변동가능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항목별 오프라인 서면평가
 - 각 평가위원의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전체의 평균점수와 계량가점을 합산하여, 60점 이상 득점 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최고 또는 최저점에서 동점 발생 시 1번만 제외
- 동점자 발생시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 순 선정
- 계량·비계량·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한도는 최대 100점으로 적용
- (평가주체) (계량, 가점) 직거래사업부 / (비계량) 평가위원회(내·외부 5인 이상)
- (예비사업자) 60점 이상 득점 사업자 중 미선정 사업자를 예비사업자 풀 구성
 - * 하반기 집행액 파악 후 잔여 보조금 수준에 따라 점수순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비계량 (90)	장터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터 운영계획 적정성 - 아래 항목 중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계획 작성 가. 지역축제·관광 등과 연계한 장터운영 계획 나. 지방정부와 협업한 장터운영 및 활성화 계획 다. 기 운영중인 매장(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과 연계한 장터 운영계획 라. 지역 대표·우수 농산물 발굴 및 장터 연계 계획 	30
	추진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주체의 전문성 및 장터 운영의지 ○ 장터 개설장소 적정성 여부 - 위치(접근성, 주변 여건 등), 면적, 편의시설(주차장, 휴식공간), 민원발생 가능성 등 	15
	품질, 가격, 소비자 서비스 관리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안전성 관리계획 - 원산지 위반, 수입농산물 판매, 도매시장이나 상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 판매 농가 규제 방안, 안전성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 가격 경쟁력 관리 방안 ○ 소비자 편의 서비스 시행 및 소비자 민원 대응 방안 	15
	홍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봉사, 도·농 교류, 문화공연 등 홍보콘텐츠 확충 계획 	10
	농가조직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 현황 및 관리계획 	10
	예산 집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보조금 집행계획의 적정성 ○ 자부담(30%) 예산 확보현황 	10
	계량 (10)	참여농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여농가 중 고령농 비중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1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참여농가 중 여성농 참여 비중 - 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20%이상 / 10%이하 			5
합계			100
가점 (15)	사회적기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5
	지방정부 주관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형이 민관협업형일 경우 	5
	지역 먹거리 패키지 참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유형이 민관협업형인 장터의 소속 지방정부가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소계		

*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비계량 평가항목 중 미포함 내용이 있을 시 해당 항목은 평가점수 미부여함(0점 처리)

IV. 보조금 집행 및 현장점검

□ 집행 및 정산절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선급금 교부(4월) aT → 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90% 선교부 * 보조금(국비) 총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사업자 자부담) 제출 필수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중간정산 신청(~8.14) 사업자 → aT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체결일 ~ '26.07.31(금) 집행분 ○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 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등 제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중간정산(8월) aT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항목 기준에 따라 선급금 집행 건 검토 후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취소 및 반납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보조금 잔액 교부(8월 말) aT → 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잔액(10%) 교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보조금 집행(~11.20) 사업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 약정체결일 ~ '26.11. 20 기간 이전/이후 집행건 인정 불가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최종정산 신청(~11.27) 사업자 → aT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정산일 ~ '26.11.20(금) 집행분 ○ 사업 결과보고서, 정산 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등 제출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집행내역 검토 (~12월) aT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적격증빙 서류 확인 후 정산

- (선급금) '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전 사업자 대상 보조금 90% 선교부
 - 보조금(국비) 총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미제출시 보조금 교부 불가
- (집행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 중간·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불인정 처리 후 집행취소 및 반납 필요*
 - * 중간 정산을 완료하였더라도,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중간 정산에서 인정된 금액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 집행 반납이 필요할 수 있음
 - 중간 정산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전체 지원 국비 중 10%) 교부 예정
 - 보조금계좌 및 보조금카드를 활용한 e나라도움상 집행등록 및 이체
 - 모든 지출 증빙은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현금 집행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정산방법) 총 2회 정산실시(자금지원 용도, 대상, 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 확인)

구분	정산 방법
중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지원항목에 따라 중간정산 ○ 중간정산 일정 전에 집행한 항목은 중간정산 날짜까지 e나라도움에 집행등록하여야 하며, 중간정산 이후 집행등록 건에 대해서는 불인정
최종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항목에 따라 최종정산 후 불인정금액에 대해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취소 및 반납처리 ○ 최종정산 결과에 따라 중간 정산에서 인정된 금액이 불인정될 수 있으며, 집행 반납이 필요할 수 있음

- (집행·정산기준) 사업자 유형(면세, 과세)에 따라 보조금 집행·정산

사업자 유형	집행·정산방법
과세사업자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집행·정산
면세사업자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 집행·정산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기준 집행·정산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집행·정산

- * 사업자 유형은 소속 기관 및 국세청에 확인 후 신청
- ** 부가세 환급사업자(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 겸업사업자)가 총액기준으로 집행할 경우, 부가세 미환급 확인서 제출 및 추후 부가세 신고 후 제반서류 제출 필수

○ (정산신청) 총 2회 정산

- 중간정산과 최종정산 모두 필수이며, 사업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 중 적격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 가능

구분	정산대상기간	정산신청 기한
중간정산	약정체결일 ~ '26.07.31(금) 집행분	'26.08.14(금)까지
최종정산	중간정산일 ~ '26.11.20(금) 집행분	'26.11.27(금)까지

- * 집행기간 이전/이후 지출 금액은 지원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 필요시 반드시 aT와 별도 협의 필수(협의 없이 임의 사용시 국비 미지원)

□ 직거래장터 현장점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장터 개설 전 부지 실사 실시
 - (점검대상) 신규 사업자 대상 aT 주관 부지 실사 또는 현장점검
 - * 2년차 사업자 중 '26년 사업 부지가 변경된 경우 부지 실사 진행
 - (점검항목) 주변 상권충돌 가능성, 부지 적합성 등
- 장터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장터 개설 후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선정 사업자
 - (점검항목) 개최장소 등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 의무 사항 준수 여부, 예산집행을 등 점검
- 지역본부와 협조하여 현장점검 내실화 추진

현장점검 항목 (의무사항)	위반시조치	사후관리 기간
① 선정장소 일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주의) : 시정명령 조치 • 2차(경고) : 시정명령 미이행시 정상 운영시까지 관리 • 3차 : 보조금 교부취소(일부 또는 전부) 	1년 이내 (약정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1년)
② 장터 개장기한 준수여부		
③ 참여농가 규모		
④ 장터 규모		
⑤ 수입농산물 판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경고) : 시정명령 미이행시 정상 운영시까지 관리 • 2차 : 보조금 교부취소(일부 또는 전부) 	

* ①~④ 세부 내용은 약정서 기준

** 의무사항 미충족사유 발생시 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요

V.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 ① 장터 부지 변경신고 의무 * 연간 최대 4회까지 변경 가능
 - 민원발생 등으로 부득이하게 장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aT와 사전협의 및 승인 득하여야 가능(미신고시 보조금 지원 제외)
- ② 반기 별 운영실적 보고 : 공문을 통한 반기 별 장터 운영실적 보고
 - 총 2회(8월, 12월) 직거래장터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 보고서 분량 및 양식 준수 필수(추후 안내)
- ③ 가용예산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청금액을 감액하여 사업선정 및 자금배정을 할 수 있음
- ④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잔여 보조금 상황에 따라 평가를 통해 보조금 추가지원 추진(9~11월)
 - * 잔여 보조금이 없을 시 미시행 할 수 있음
 - ** 장터운영자 역량강화(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 온라인마케터양성교육) 교육 수료 사업자 및 도심형 정례장터 가점 부여 등 우대 가능
- 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기간 내 사업을 추진(보조금 집행)하지 않는 경우,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 ⑥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 aT 및 지방정부의 현장점검에 협조해야함
- ⑦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등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 통합관리망)에 공시해야함
 - * 정보공시 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 ⑧ 사업자 신청유형에 따라 필수 집행항목을 사업기간 내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장터 운영실적 평가시 반영 예정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유의사항

① 약정체결일부터 보조금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약정체결일~'26.11.20) 이전 또는 이후 지출 금액은 불인정

- * 지출 기준일 : ① 보조금 또는 예탁계좌 이체일자 ② 보조금 카드 승인일자
③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 정산신청기한 : (중간정산) '26.8.14(금)까지 / (최종정산) '26.11.30(월)까지
- * 정산대상기간 : (중간정산) 약정체결일 ~ '26.07.31(금) 집행분
(최종정산) 중간정산일 ~ '26.11.20(금) 집행분

②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집행해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정산을 위해 사업자는 반드시 e나라도움 이용방법을 숙지해야하며, 과실·미숙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자가 부담
- e나라도움에 등록된 예탁계좌 또는 보조금 계좌(카드)로 집행한 건에 한하여 인정
- 보조금 집행등록 시 e나라도움에 적격증빙(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붙임1] 참고)* 첨부 필수

* e나라도움에 적격증빙 미등록 건 불인정 및 현금집행·간이영수증 불인정

* 법인명의 또는 개인(대표자 등) 명의의 계좌, 카드 등 지출 불인정

③ 동일·유사사업으로 타 정부(지방정부), 유관기관 및 aT 타사업 보조금과 중복집행 할 수 없음

-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내역 적발시 즉시 선정 취소 및 추후 3년간 지원 제한 조치

④ 총 사업비 20% 범위이상 사업계획(예산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aT 본사 담당자 승인을 득하여야 함

⑤ [붙임1] 보조금 지원항목에 준하여 예산을 수립·집행하여야 함

- 항목에 없는 비용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aT와 사전협의 후 승인필요

⑥ 과세사업자 및 겸업사업자(매입세액불공제) 경우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보조금 외 자기부담금으로 집행해야함

⑦ 보조금 횡령 및 부당사용이 확인된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가능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시 aT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
-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사용 예시〉

- ① 고정 지출 증빙자료 중복사용, 폐업 사업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사용 등 허위 증빙
- ② 의도적 분할 수의계약(쪼개기 계약)
 - 입찰을 통한 계약을 피하기 위해 동일현장, 동일시기, 혹은 유사한 품목을 수량 등을 쪼개어 계약을 한 경우, 부적정 계약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환수의 대상
- ③ 보조사업자 가족간 거래 및 직원 명의 거래업체 등 특수인 관계 거래 금지
 - 업체 임직원, 대표자 친인척, 계열 관계 법인 등 금지

⑧ 그 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붙임 1] 정례 직거래장터 보조금 지원항목

비목	세목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	비고																		
시설·장치	텐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 시 필요한 텐트, 천막, 나무 부스 구매 또는 임차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개당 단가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텐트</td> <td>구매</td> <td>500천원</td> </tr> <tr> <td>임차</td> <td>180천원</td> </tr> <tr> <td rowspan="2">천막</td> <td>구매</td> <td>300천원</td> </tr> <tr> <td>임차</td> <td>100천원</td> </tr> <tr> <td rowspan="2">나무 부스</td> <td>구매</td> <td>500천원</td> </tr> <tr> <td>임차</td> <td>300천원</td> </tr> </tbody> </table>	구분		개당 단가한도	텐트	구매	500천원	임차	180천원	천막	구매	300천원	임차	100천원	나무 부스	구매	500천원	임차	300천원	
	구분		개당 단가한도																		
	텐트	구매	500천원																		
		임차	180천원																		
	천막	구매	300천원																		
		임차	100천원																		
나무 부스	구매	500천원																			
	임차	300천원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 시 활용할 부대시설(테이블, 의자, 파라솔 등) 구매 또는 임차비용 장터 내·외 홍보 콘텐츠(체험, 놀이 등) 진행 시 필요한 부대시설 임차비용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의 경우 개당 취득단가 50만원까지 지원 																				
전자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 시 필요한 전자기기 임차비용 TV(이동식), 발전기, 빔프로젝터, 노트북, 프린터, 스피커, 앰프 등 																				
냉·난방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시 필요한 냉·난방기기 구매 또는 임차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종류</th> </tr> </thead> <tbody> <tr> <td>구매</td> <td>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온풍기, 난로, 냉·보온통</td> </tr> <tr> <td>임차</td> <td>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냉·온수기(정수기), 온장고</td> </tr> </tbody> </table>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의 경우 개당 취득단가 50만원까지 지원 	구분	종류	구매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온풍기, 난로, 냉·보온통	임차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냉·온수기(정수기), 온장고	총 사업비의 20% 이내													
구분	종류																				
구매	선풍기, 이동식 에어컨, 온풍기, 난로, 냉·보온통																				
임차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냉·온수기(정수기), 온장고																				
실적관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실적 관리 시 필요한 기기 구매 또는 임차비용 인원 계수기, 농가별 개별 카드단말기 등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의 경우 개당 취득단가 50만원까지 지원 																				
시설장치보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시 활용할 시설·장치 보관시설 임차비용 컨테이너, 보관창고 임차 등 																				
운영	소모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또는 임차비용 사무용품, 소모성 기자재, 생수 등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당 취득단가 5만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의 20% 이내																		
	단체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통일성을 지닌 의류 구매 및 제작 비용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당 취득단가 5만원까지 지원 장터명이 기재된 것에 한하여 지원 * 운영주체명과 혼동 주의 																			
	컨설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컨설팅 비용 장터 시설구성, 디자인, 홍보 마케팅 등 	총 사업비의 20% 이내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비용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포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시 활용할 포장재 제작 또는 구매 비용 비닐 포장재, 종이 포장재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명이 기재된 것에 한하여 지원 * 운영 주체명과 혼동 주의 																			
	잔류농약검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거래장터에 출하하는 참여농가 농산물 대상 잔류 농약검사 실시 비용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의 5% 이내																		

비목	세목	세부 지원내용 및 기준	비고
홍보	공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활성화를 위한 공연비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대행)사를 통한 공연비 지원(지역 동호회, 개인에게 입금불가) - 1일 기준 단체당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 	총 사업비의 5% 이내
	온·오프라인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에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지원 -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애드벌룬, 에어아치, 배너, 알림판, 신문광고 등) 및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배너광고, 방송·라디오 광고 등)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시 aT 로고 및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삽입 필수 	
	농식품 시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에서 실제 판매하는 농식품에 대한 농식품 시식 비용 - 농식품(가공포함), 축산물, 전통주에 한하여 시식비 인정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가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에 한함 - 공산품, 수산물, 주류(전통주 제외) 인정 불가 	총 사업비의 20% 이내
	농식품 판촉용 증정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농식품 판촉용 증정품 비용 - 농식품(가공포함), 축산물에 한하여 인정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농가가 직접 생산·제조하는 제품에 한함 - 공산품, 수산물, 주류(전통주 포함) 인정 불가 	총 사업비의 20% 이내
인건	일용직 고용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치 설치/철거/보관비, 주차 보조, 청소, 경비 등 일용직 근로자 고용 인건비 - 1일 1명 170,000원까지 지원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별 지급 금액이 150,000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지급 - 원천징수내역 미첨부시 감액 후 정산 - 운영주체 및 참여농가 인건비 불인정 	총 사업비의 20% 이내
	강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교류행사, 생산자 교육 진행 시 필요한 일시적 강사료 - 1인 시간당 20만원 한도(1일 1명 최대 60만원 지원)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별 지급 금액이 125,000원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 후지급 - 원천징수내역 미첨부시 감액 후 정산 - 운영주체 인건비 불인정 	
교육·교류행사	여행자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교류행사, 생산자 교육 진행시 필요한 여행자보험료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 한함 	
	식비 및 다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비 : 1인 최대 15천원까지 지원, 다과비 : 1인 최대 7천원까지 지원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지출 및 주류 불인정 - 참석자 서명 기준 정산 	
	차량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교류행사 및 생산자 교육 진행시 필요한 차량임차비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항공권, 선박 지원불가 	
	소비자 교류 행사 기념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교류행사 진행시 활용할 농산물 증정품 - 참석자 서명기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가공포함), 축산물에, 전통주 한하여 인정 - 공산품, 수산물, 주류(전통주 제외) 인정 불가 	
	장소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교류행사 및 생산자 교육 장소 임차비 	
	역량강화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농수산물유통교육원 수강료 / 강사료 지원 - 마케팅 / 유통 / 식품 분야 교육에 한함 - aT농수산물유통교육원 외 강의료의 경우 aT와 사전협의 필수 ※ 교육신청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 농수산물유통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aT 농수산물유통교육원 교육 중 “찾아가는 교육(농산/수산)” 지원 불가 	

* 별도 표기가 없을 시 위 표의 표기된 금액은 국비+자부담 기준임

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 집행유형별 공통 제출서류(필수)

구분	제출서류
계좌이체시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견적서
	③ 이체확인증(내역서)
카드결제시	① 카드매출전표
	② 견적서 * 영수증에 수량, 단가가 표기될 경우 생략 가능

* 사진입증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첨부 필수(물품구매 건은 사진필수)

○ 지원항목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추가 제출서류	
보험료	○ 보험증권	
여행자보험료		
잔류농약검사비	① 검사 결과 통지서 ② 검사 지원농가 목록	
인건비	공통	○ 모든 인건비는 사업자 임직원이 아닌 별도 고용 인력에 한함
	일용직	① 근로자 통장사본 ② 근로자 신분증 ③ 근로계약서 ④ 원천징수부(해당시) * 원천징수부 미제출시 해당 금액 지원불가 ⑤ 근무일지 또는 출근부(근무지, 근무일수, 서명 포함)
	강사료	① 고용계약서(강의일시, 강의내용, 지급금액 등 표기) ② 강의자료 ③ 강의사진 ④ 원천징수영수증(기준금액 일 12.5만원 초과시)
농식품 시식비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농가를 통한 구매시 ① 직거래장터 농가 판매 증빙용 영수증 [양식5] ② 직접생산증명서(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증, 농경제 확인서, 농협조합원확인서 등)	
농식품 판촉용 증정품		
소비자 교류행사 기념품		
수강료	○ 강의 이수증(이수확인증, 수료증)	
교육·교류행사비	○ [양식7] 결과보고서(1회 10명 이상 참여 의무/ 운영주체인력 제외) ○ 도서지역(제주도, 울릉도 등) 지원 제외	

제출서류

유의사항

- ① 모든 지원내용은 실집행액 기준이며, 운송비 등 부대비용 포함 단가·금액 기준임
- ② 용역 계약체결을 통한 집행시 비교견적 및 계약서 필수 제출(1천만원 이내 포함)
* 계약 추진시 비교견적서 필수 징구(비교견적 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견적서 내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 구분으로 금액 작성 필수(시설장치, 인건비, 운송비 등 항목별 확인이 가능해야함)
- ③ 자산성 소모품 또는 비품(컴퓨터, 노트북, 프린터, 카메라 등) 구입 불가
- ④ 사후증빙(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계약체결, 사업기간 종료 후 계약체결 등) 인정 불가

[양식 1]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신청서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민관협업형 <input type="checkbox"/> 민간자율형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진입 희망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운영 활성화 희망 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운영 안정화 희망 사업자	가점사항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 먹거리 패키지 (민관협업형 限)	
	장터유형*	<input type="checkbox"/> 도심형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 장터유형 : (도심형)개설부지가 특·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소재 / (지역형)개설부지가 지방 시·군 소재			
사업자 정보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구분 (택 1)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민법32조)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input type="checkbox"/>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산림조합법 제2조)					
		<input type="checkbox"/> 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input type="checkbox"/> 영농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input type="checkbox"/> 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자 유형 (택 1)	<input type="checkbox"/> 과세사업자 * 부가세제외						
	<input type="checkbox"/> 면세사업자 * 부가세포함						
	<input type="checkbox"/> 겸업사업자(매입세액불공제) * 부가세포함						
	<input type="checkbox"/> 겸업사업자(매입세액공제) * 부가세제외						
담 당 자	성함/직위	/		이메일			
	사무실연락처			휴대폰연락처			
지방정부 정보	기 관 명			부서명			
	담 당 자	성함/직위	/		이메일		
		사무실연락처			휴대폰연락처		
지방정부 지원사항	<input type="checkbox"/> 예산지원		<input type="checkbox"/> 부지제공		<input type="checkbox"/> 농가모집		
장터 운영개요	장 터 명						
	개설주소	부지면적 여부 (2년차 사업자)	(O, X)				
	운영규모	부지면적	㎡		개설횟수	회	
		텐트크기	O×Om		텐트갯수	개	
	운영일정	~			개장주기		
총 농가수	명			회당 참여농가	명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관련 법령 및 aT 규정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하							

2026년 정례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서

1. 장터 운영개요

운영목적

- (예시) 소규모 농가 및 농식품 창업자들의 판로 지원 및 역량 강화
-

운영방향

- (예시) 지속가능한 먹거리 및 생산자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자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

'26년 장터 운영개요

- 장터명 : 00직거래 장터
- 개설장소 : 00공원(경기도 00시 00로)
- 운영기간 :
- 운영횟수 : 00회 / 00일
- 운영주체 :
- 참여농가수 : 00명 / 00명

2. 추진여건

운영주체 주요실적(주요 실적 및 성과, 특이사항 등)

- 0000년 00월 00시장 개설
- 0000년 0월 00법인 출범
- 2000 0000페스타
 - 사업기간 : 2000. 0 ~ 2000. 00
 - 직거래 장터 개최 : 총 00회(매출 000천원, 방문객 약000명)
 - 참여농가 : 00개소
 - 직거래장터 프로그램 운영 성과
 - * 0000 프로그램 3회 운영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본 사업 담당조직)

- (예시) 00법인 0000
 - 이사회 : 000 포함 총 0인
 - 00국 : 사업기획 담당 총 0인
 - 사업 담당 사무국 조직 및 역할
 - * 총괄 0인 - 총괄
 - * 기획 0인 - 주제 설정, 00 기획 진행 등
 - * 운영 0인 - 농가 조직, 00 운용 등
 - * 홍보 0인 - 00
 - * 지원 0인 - 00

※ 전문성 및 추진역량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개설장소의 적정성

- (장터규모) 000m² (장터 부스 000m²(3x6 00동), 편의장소 000m²)
- (접근성) 지하철 00선 00역을 비롯 대중교통 접근성 용이
- (인접상권) 00재래시장, 00마트와 000m 반경에 있음
- (주변시설) 주변 00호수공원 등 관광지들이 발달
- (편의시설) 주차장(00대 주차가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있음
- (지역특색) 000가 지역대표상품으로 직거래장터

※ 접근성, 인접상권, 주변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휴식공간), 지역특색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장터 운영계획

- 장터 운영계획
- 아래 항목 중 1건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계획 작성
 - 가. 지역축제·관광 등과 연계한 장터운영 계획
 - 나. 지방정부와 협업한 장터운영 및 활성화 계획
 - 다. 기 운영중인 매장(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과 연계한 장터 운영계획
 - 라. 지역 대표·우수 농산물 발굴 및 장터 연계 계획

□ 예) 지역축제 000과 연계한 000장터운영 및 활성화 계획

- 추진방향
 -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 주요내용
 - 지역축제 000과 연계하여 이벤트 행사(000, 00게임 등)를 통하여 소비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직거래장터 추진...
 - 생산자(판매자)별 농산물 시식 진행
 - 공예품 만들기 체험
 -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직거래장터 축제 개최
- 추진방법
 - 지역축제 주최 측과 장터 일정 조율(월 0회 이상 실무회의 추진)
 -
-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000축제	0월	추진내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장터 홍보계획

- 추진방향
 - 000장터를 소비자들이 친숙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장터 개장(주 0회 00일 개장)과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장터에 대한 친근함을 유도하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방법
 - 00대회를 개최하여 농가와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00체험 및 우리지역 농산물 시식 및 증정을 통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애착 형성을 유도.
 - 지역축제와 00장터를 연계하여 운영 및 홍보

○ 세부 홍보내용

- 소비자 참여형 행사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 및 장터에 대한 홍보를 실시.
- 각 행사에 대한 문자발송, 배너, 현수막, 익산로컬푸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하여 참여를 유도

구분	대상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방법
00와 000 한마음장	생산자/ 소비자	0~0월경	전체 소비자 회원들과 000 대회 개최예정. 각종 00체험행사 및 농산물 꾸러미 증정행사, 00 홍보 예정.
농000 증정행사	0000명	0~0월경	장터 이용자에게 지역 000 증정

□ 농가조직화 정도

○ 참여농가 및 품목 확보현황

품목군	농가수	세부품목류
양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용류		
버섯·임산물류		
가공식품류		
반찬류		
장류		
축산물류		
즉석식품류		
기타		
합 계		-

○ 참여농가 관리계획

- 농가조직화(참여농가 확보현황)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조합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판매 가능한 농업인, 영세농·고령농·여성농 등 경쟁력이 낮은 농업인 중심의 농가 확보함.

- 참여농가 관리계획

00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직거래장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장터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 취약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
원거리 교통약자인 취약농 등의 농산물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유통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 상권 고착화 및 상인화 방지 방안
조합원 대상으로 000 등 보수교육 진행(0월 / 0회)

※ 취약농가 참여 활성화 방안, 농가교육 방안 등 구체적으로 기술

□ 품질 / 가격 / 소비자 서비스 관리 방안

- 판매 품목 품질관리 계획
 -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참여농가가 직접 재배 또는 직접 가공하는 품목을 원칙
 - 정기적으로 분과회의 및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산지 위반, 수입농산물 판매,
 - 장터운영위원회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위반하거나 소비자 리콜 발생시 ...

※ 원산지 위반, 수입농산물 판매, 도매시장이나 상인에 구매한 제품 판매 농가 규제 방안, 안전성 관리계획, 잔류농약 검사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 가격 경쟁력 관리 방안
 - 장거리 수송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내 출하농가가 직접 생산한 품목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 소비자 편의 서비스 시행 및 소비자 민원 대응 방안
 - 카드결제 장비 보유(카드단말기...)
 - 농식품 판촉행사, 시식행사 등 이벤트 진행

- 소비자 민원 대응 방안,
 - 소비자 민원(품질, 가격, 서비스, 분쟁 등) 발생시 대응방안
 - 장터운영위원회 상시회의를 통해 소비자 민원 해결노력

※ 소비자 편의 서비스(카드결제, 배송 등) 시행 방안 및 소비자 민원·분쟁시 대응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장터 운영실적 관리계획

- 장터 참여자, 장터 이용자, 판매품목, 매출 현황등을 집계 후 운영방안 논의
- 소비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시 실시
-

※ 매출액, 방문객 수, 소비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장터 운영실적 관리방안 구체적으로 기술

4. 예산집행계획

자부담(30%) 재원 확보 현황

-
-

예산 집행계획 세부내역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부내용	총보조금 (A)	부가세 (B=A*10%)	공급가액 (C=A-B)
시설장치					
		①소계			
운영비					
		②소계			
홍보비					
		③소계			
인건비				-	
				-	
				-	
		④소계		-	
교육 · 교류비					
		⑤소계			
⑥합계(①+②+③+④+⑤)					

* 총 보조금(국비+자부담) 기준작성

** 총 보조금 20% 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예산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 후 aT 승인 필수

[양식 4]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

직거래장터 참여농가 명단

NO	지역	성명	품목군*	경작지(공장)주소* 대표주소 1개만 기재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취약농여부 (고령농/여성농)
예)	전남 나주	홍길동	양곡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601010	남	010-0000 -0000	고령농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 품목군 : 양곡, 과일, 채소, 특용, 버섯·임산, 가공식품, 반찬, 장, 즉석식품, 축산물, 기타 중 택1

** 고령농 기준 : 1961.01.01. 이전 출생자

위 농가들의 직접 생산, 가공, 채집을 확인하였습니다.

* 운영주체명 :

* 대표자 서명 : (인)

부가세 등 미환급 확인서

「2026년도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본 단체는, 본 사업수행에 있어 관세, 부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가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받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정 취소, 향후 본 사업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단체/개인명:

대표자 성명: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귀하

정례 직거래장터 교육·교류행사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운영주체명 :
- 일시/장소 :
- 교육(교류) 대상 :
- 교육(교류) 내용 :

2 추진사항

- 프로그램 상세

행사종류	일정		항목(교육, 체험 등)	비고
	날짜	시간		
소비자교류/ 생산자교육				

- 보조금 집행내역

행사명	참여 인원	항목		산출기준
		세부항목	집행금액	
				단가×인원
총계				

3 추진효과

-
-
-
-
-

